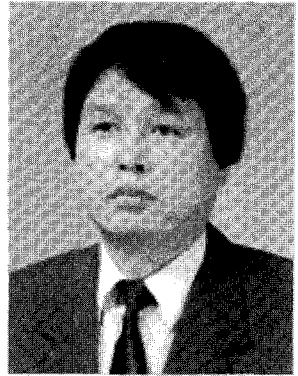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필요한 것인가!

분쟁이 없다면 표준계약서는 필요없다



김 정 주 건국대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육계 사육 표준계약서를 놓고 말이 많다. 사육농가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계열주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양쪽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

우선 사육농가 쪽에서는 육계 사육 표준계약서만 만들어지면 그동안 계열주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당했던 불합리한 제도가 말끔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계열주체들의 입장에서 마치 육계 사육 표준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자신들

을 옥죄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육계 사육 표준계약서는 계열주체, 사육농가 양측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쓸 때 조항을 일일이 따지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면하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예컨대 전세집을 얻고자 복덕방에 가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라. 웬만한 법률지식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계약서에 무엇을 포함해야할지 난감할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



을 탈기위해서 공인 중개사 협회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작성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복덕방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 대상, 보증금, 계약기간, 이사 올 날짜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집주인과 합의 된 내용을 손으로 써 넣고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끝난다.

각종 보험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계약을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당국이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셋집 하나 계약하는 데, 보험하나 드는 데에도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려고 이처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생업과 관련한 사육계약을 체결할 때 농가의 입장에서 불안함을 없

애주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육계표준계약서가 사육농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계약서 없이, 또는 미비된 계약서에 의하여 사육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예기치 않은 분쟁이 생기면 계열주체도 좋을 것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일찍이 육계계열화 사업이 한창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1980년대에도 육계표준계약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육계발전협회가 이를 적극 권장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사안이 더욱 복잡해 진 오늘날 그 유용성이 사라질 리는 없지 않은가?

막상 육계 사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예를 들면,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사육수수 및 회전수, 자재의 공급과 품질, 병아리 입추에 관한사항, 사

양 및 기록관에 관한 사항, 방역 및 위생관리, 육계 출하, 닭의 상처 및 운송, 출하중량 계근 및 출하수수, 기준 육성율, 기준 사료 요구율, 사육비 수수료, 원자재의 임의 처분금지, 기한 이익 상실,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담보, 비용의 부담, 계약의 해지, 관할법원, 조문의 해석 등 사육 농가를 보호하려는 조항도, 계열주체를 유리하게 하는 조항도 있다.

그 중에서도 기준사료 요구율, 기준 육성율, 사육수수료, 등은 사육농가의 수익과 그리고 계열주체의 비용과 직결되므로 서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는 비교적 덜 민감한(그러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치명적인 사항)은 계약서상에 공란으로 놓아둠으로서 쌍방이 합의하여 추가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계열주체나 사육농가의 입장에서 계약서 같은 것 없이 구두로 약속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계약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원래 우리가 분쟁 없이 살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법도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육계계열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갈등구조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분쟁이 될 만한 것을 사전에 명쾌하게 문서화 해두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육계 계열화 사업으로 육계생산의 거의 100%를 충당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사육농가들의 불만을 보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음은 미국의 육계 농민단체가 회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다.

“계약조건이 바뀌어도 계약서 내용은 고쳐지지 않고, 심지어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사육자도 있으며, 사육자들이 말로 하는 약속에 주로 의존하였다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크게 실망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장 지도원과 나는 대화 중 중요한 것은 날짜, 시간, 장소, 대화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 두어야하고, 구두로 회사와 합의한 중요한 내용은 문서로 만들어 회사에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야한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일지를 작성 보관해야하고 계량전표, 사료기록, 등급, 병아리 기록, 포상관계, 편지(편지 겹봉투) 등 모든 것을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인정으로 얽힌 사회이다 보니 합리성 보다는 인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껌연쩍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육계 계열화 표준계약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된다.

육계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말고는 순전히 계약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정부나 제 삼자가 이러쿵, 저러쿵 참견할일은 아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대개는 쌍방의 이해가 상반되므로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유리하게 하는 계약서란 있을 수 없고 설령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지나친 요구는 계약의 원천 무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만 육계산업의 가장 핵심문제인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분쟁만 없다면 표준계약서 이야기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양계**